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가. 외국인투자 정책

(1) 개요

□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 가나 정부는 1994년 투자의 기본 법률인 가나투자진흥센터법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Act 1994: Act 478)⁵⁾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조치 및 투자 보장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가나투자진흥센터법은 광물과 석유 등의 투자⁶⁾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의 회사 매수, 합병, 인수 및 신규 투자 등 투자 관련 업무에 적용되며, 내·외국인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효력이 미침.

5) <부록1> 참조.

6) 광업에 대한 투자는 광물위원회,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산업 에너지부, 자유무역 지대 투자는 자유무역지대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음.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투자진흥센터법의 제정으로 외국인의 회사 등록절차가 효율화되었으며, 세금, 외환, 수익 처리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가 정비되었음.
- 가나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⁷⁾의 회원국으로 민간 투자를 보증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진흥을 위한 지원 기관 설립

- 가나 정부는 1994년 가나투자진흥센터법의 제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관리, 감독을 위하여 가나투자진흥센터(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GIPC)를 설립하였음.
 - 가나투자진흥청은 대통령실 산하기관으로 외국인투자상담, 등록 관리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7)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라고도 하며,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등과 함께 세계은행으로 불림. 이전위험, 권리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정보기술 제공, 투자촉진협정 체결, 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 등도 담당함.

가나투자진흥센터 업무

- 가나 경제의 회생을 위한 투자 증진 및 건전한 투자 활동을 위한 관리, 감독
- 내·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조치 수행
- 투자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배포
- 투자진흥센터법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의 등록 업무 수행
- 투자진흥센터법이 적용되는 모든 투자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 등록 업무 수행
- 투자 촉진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행사 조직 등

자료 : 주 가나 한국 대사관.

□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 1995년 가나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법(Ghana Free Zone Act 1995: Act 505)을 제정하여 가나를 서부 아프리카의 무역, 투자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였음.
- 자유무역지대에는 수출자유지역, 산업공단, 자유항 등이 건설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가 가능⁸⁾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

- 가나 정부는 1990년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을 정비한 후, 민간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항구,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 확충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8) 외국인은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산, 광산, 증권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파트너가 필요함.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 정부는 자본 및 기술도입의 발판이 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농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정부는 특히 면, 직물 및 의복 산업, 전기 전자 산업, 정보통신 기술 산업, 해산물 및 농산물 가공 산업, 부동산 개발 산업 등 성장성이 잠재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일부 품목 관세 면제

- 가나는 수입 상품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5%까지 차등적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자를 위해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함.
 -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농업 및 산업 분야의 플랜트, 기계류, 장비류 등임.
- 교육, 건강,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절차에 따르는 비용 (0.5~1.0%) 등을 지불해야함.

□ 법인세 감면 및 면제

- 조세 제도상 가나 정부는 모든 법인에게 25%의 법인세를 부과

하고 있지만, 비주력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줌.

- 가나의 비주력 상품⁹⁾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율은 8%이며, 농민 또는 장비임대회사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임.

- 가나 정부는 부동산, 농업 분야 등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 운영 개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면제해 줌.

<표 IV-1> 법인세 면제 현황

구 분	기 간
부동산	5년
농촌은행	10년
농업	
- 코코아 재배	영구 면제
- 소 방목	10년
- 유실수 재배 (커피, 야자나무, 코코넛 등)	10년
- 가축업 (소, 가금류 제외)	5년
- 수산양식업, 가금류	5년
- 농산물 가공	5년
폐기물 처리	7년
자유무역지대 기업	10년 (10년 후 8%)

주 :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9) 원예 작물, 코코아 이외의 농산품 및 농산물 가공품, 목재 제품, 수공예 제품 등

□ 투자 지역에 따른 혜택

- 가나 정부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 가나 정부는 아크라 및 테마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할 경우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아크라 및 테마를 제외한 지역 수도에는 25%, 기타 지역에는 50%의 환급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산물 가공업체는 법인세 감면 혜택에 따라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인세가 적용됨.

<표 IV-2> 농산물 가공업체의 지역별 법인세 현황

구 분	법인세
아크라 및 테마	20%
지역 수도 (아크라, 테마 제외)	10%
북부 3개 지역 (Northen, Upper East, Upper West)	0%
기타 지역	0%

주 :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자본 공제 및 손실 이월

- 가나 정부는 컴퓨터, 자동차 등 감가상각 대상인 물품 중 생산에 이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10~40%의 자본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컴퓨터 및 관련 부품 : 40%
 - 자동차, 트레일러, 플랜트 및 기계류: 30%

- 기관차, 운반 시설, 항공기 부품 : 20%
- 건물 등 : 10%
- 수출 품목, 농업, 광업 등에 투자한 기업은 최장 5년까지 손실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보장 제도

- 투자진흥센터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공인된 은행을 통해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함.
- 가나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에 가입하여 송금 제한, 계약 위반, 몰수, 전쟁 등의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2010년 4월 우리나라와 가나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협정 체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가나 진출 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우리 기업의 가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우리 기업의 가나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가나 현지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조약상의 세율인 배당 5%, 이자 7.5%, 사용료 8%가 적용됨.

□ 자유무역지대 투자 혜택

- 가나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를 서아프리카의 대표적 무역 및 투자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출 자유지대, 산업공단, 자유항 등을

건설하였으며, 자유무역지대 투자자에게 관세 및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과 거래되는 모든 수입 및 수출 품목에 대하여 100% 관세가 면제되고, 기업 이익에 대해 10년간 면세 혜택이 주어짐.

다. 외국인투자 절차

□ 다양한 형태의 투자 가능

- 외국인은 가나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유가증권 및 수출 무역에 대한 투자 형태로 가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 가나에서는 1인 소유형태, 합작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연락 사무소, 현지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회사 설립 등록시 투자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회사에 대한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내·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흔한 회사 유형임.
- 외국인 투자 형태로는 합작회사,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투자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결정됨.

신청서 상 회사유형 선택란

Registrar General's Particulars:

(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No: _____

(ii) Type of enterprise (please tick)

- 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
- Private Limited Liability
- Public Limited Liability
- Co-operative Society
- External Company (Liaison Office)
- Statutory Board/Gov't & Quasi-Gov't Institution

- 합작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내국인과 합작 투자하는 경우로 합작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지분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 자본금은 1만 달러임.¹⁰⁾
- 외국인소유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가나에서는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은 5만 달러임.
- 무역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역 및 상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조회사도 무역기능을 병행할 경우 무역회사로 간주되며, 최소 필요 자본금은 30만 달러임.

10) 합작회사 투자시 내·외국인의 최소 지분을 기준은 없음.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업종

가나 정부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이용업, 미용업, 택시업, 도박·복권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역시 제한하고 있음.

- 택시업: 보유 택시 10대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 가능
- 수산업: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만 투자 가능하며, 참치잡이 어선의 경우 50%까지 소유 가능

□ 회사 설립 및 투자 승인 절차

-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나투자진흥센터법에 따라 가나투자진흥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최소 외국인 투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회사 등록 절차는 회사설립 신고, GIPC 등록,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평가의 5단계로 진행되며, 다수의 공공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설립 신고 후 등록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림.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 가나에서 외국인이 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 조치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81일 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회사 설립 및 투자 승인 절차		
1. 회사설립 신고	2. 투자승인 요청	3. 이민쿼터 신청
등록청 (Registrar General's Department)	투자진흥센터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투자진흥센터 신청 이민국 처리
최소 5근무일 소요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
4. 세제당국 등록	5. 환경영향 평가	
국세청(IRS) 및 부가세 사무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	

자료 : 주 가나 한국 대사관.

□ 회사 설립 신고

– 가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업무는 회사 설립인 또는 대리인(법률사무소)이 수행 가능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신고 내용은 회사 이름, 사업 영역, 대표 임원 (2인 이상), 자본금/지분 구성, 부채 관계, 고용 인력, 이사회 임원별 업무 영역 등임.

□ 가나투자진흥센터 등록 및 이민쿼터 신청

- 가나투자진흥센터는 광산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등록, 관리하는 곳으로 등록청 회사 설립 신고 후 가나 투자진흥센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 후 5일 이내 투자 요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 요청시 등록청에서 발급된 회사 등록증 및 정관, 회사 개업증, 자본금 증빙 서류 등을 투자 승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신규 투자에 대한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 등록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 갱신 및 등록증 교체 작업 역시 가나투자진흥센터에서 이루어짐.

<표 IV-4> 가나투자진흥센터 승인 신청 비용

단위 : 달러

구 분	비 용
합작회사	1,000
외국인소유회사	2,500
무역회사	5,000
갱신	1,500
등록증 교체	100
연락 사무소	7,500
관광업	
-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	1,000
- 투자금액 50만 달러 ~ 2백만 달러	5,000
- 투자금액 2백만 달러 이상	10,000

자료 :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투자진흥센터는 기술이전합의서에 대한 등록, 관리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 요청 시 기술이전합의서 신청이 가능함.
- 가나 정부는 외국인투자 금액에 따라 거주 가능한 외국인 인원을 차등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거주 자격에 요청에 해당하는 가나 이민쿼터 신청서는 투자진흥청에 제출된 후 가나 이민국(Ghana Immigration Service)에 전달되어 처리됨.
 - 가나 거주 가능 인원수는 투자 금액별로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이민쿼터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됨.

<표 IV-5> 투자 금액별 거주 가능 인원수

단위 : 명

투자 금액	인 원
1만 달러 ~ 10만 달러	1
10만 달러 ~ 50만 달러	2
50만 달러 이상	4

자료 :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세제당국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 신청

- 설립된 기업에 대한 고유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부여를 위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및 부가세 사무국(Value Added Tax Secretariat)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함.
-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기관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청 후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영향 없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의 세 단계로 판정되며, '영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2. 외국인투자 제도

가. 무역제도

□ 관세 제도

- 가나는 수입 상품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3개의 석유 관련 제품의 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됨.
- 2007년 가나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2.7%로 2000년 14.7%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07년 농산물 분야는 평균 17.5%, 비농산물 분야는 평균 12.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음.

□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 회원국으로 서부 아프리카 15개국과 단일시장을 이루고 관세동맹을 맺고 있음.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는 ECOWAS 회원국으로부터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 (30% 이상)된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EU 및 세계시장에서의 특혜

- 1975년 체결된 로메 (LOME) 협약에 의하여 가나는 EU 시장에서 관세 특혜를 누리고 있음.
- 2004년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¹¹⁾의 연장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나에서 생산되는 노동집약상품은 2015년까지 미국시장에서 무역상의 특혜 조치를 받게 되었음.

로메 협정 (Lome Agreements)

1975년 EC (유럽공동체) 9개국과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46개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임. 통상협정, 1차 상품의 수출소득의 보증, 공업협력, 경제원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ACP 국가의 주요 1차 상품 12품목의 수출에 의한 소득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 EC 수출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7.5% 이상 하회하였을 경우 차액을 EC측이 무이자로 보상·융자를 제공함. 보상·융자를 제공받은 국가는 수출이 기준액을 상회하였을 때 상환하게 되며, 후발개발도상국은 상환이 면제됨. 보상 규모는 5년간에 약 5억 달러임.

※ 12품목 : 커피, 코코아, 땅콩, 바나나, 목화, 야자유(油), 코코넛, 철광석, 홍차, 목재, 피혁, 사이잘삼

11) 미국이 사하라 이남 3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아프리카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미국 정부는 동 법에 의해 미국에 수출되는 노동집약상품에 대해 2000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건의에 의해 동 법이 연장되면서 2015년까지 혜택이 연장되었음.

□ 수입규제

- 가나 정부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폐기물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녹색 폐기물 (Green)
 - 유해성이 없고 국가간 이동 중 위험 정도가 무시해도 될 정도인 폐기물로 통상 국가간 이동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귀금속 및 금속 합금과 그 폐기물, 철강 스크랩 및 그 폐기물, 금속 함유 폐기물, 종이·판지, 고품 플라스틱, 섬유 폐기물, 농산물 폐기물 등
- 황색 폐기물 (Amber)
 - 1개 이상의 유해성을 가지는 폐기물로 주의가 요망되며, 위험성이 크지는 않으나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로 국가간 이동 통제 대상이 됨.
 - 구리, 아연, 납 등의 잔재물, 의약품 제조·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슬러지 등
- 적색 폐기물 (Red)
 - 1개 이상의 유해성을 가지는 폐기물로 황색 폐기물보다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폐기물
 - PCB(염화폴리비페닐), 석면, 세라믹 섬유 등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에서 금화,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 장비, 영화 필름, 도박 기계, 동·식물 등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함.
 - 통신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NC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나 정부는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나. 금융제도 및 외환제도

□ 금융당국

- 중앙은행 : Bank of Ghana
 - 가나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지급·결제제도를 총괄하며, 지불제도 기능을 감독함.
 -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것임.

□ 금융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높은 외국자본 참여율

- 가나 정부는 2000년대 초 은행업 관련 각종 규제 및 애로 사항을 완화시켜 주요 외국계 은행의 가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은행의 영업 범위를 완화시켜 은행업 면허로 상업, 투자, 카드, 중소기업 금융, 모기지 등의 업무가 가능함.

- 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 형태의 금융의 경우 약 8백만 달러, 기타 제한된 형태의 금융은 150만 달러~3백만 달러가 필요함.
- 가나에서 영업 중인 26개의 은행 중 외국 자본이 설립한 은행은 나이지리아계 5개 은행을 포함하여 13개로 외국계 은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가나 은행 현황

- 국영은행
 - Bank of Ghana, National Investment Bank, Agricultural Development, Ghana Commercial Bank
- 시중은행
 - Amalgamated Bank, ARB Apex Bank, Barclays Bank of Ghana, CAL Bank, Ecobank Ghana, First Atlantic Bank, HFC Bank Ghana, Intercontinental Bank Ghan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Merchant Bank Ghana, Prudential Bank, Sg-SSB, Stanbic Bank Ghana, Standard Chartered Bank Ghana, Trust Bank, Unibank Ghana, United Bank of Africa Ghana, Zenith Bank Ghana 등

□ 송금의 자유 보장

- 가나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1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 높은 이자율 및 수수료

- 가나 은행의 가나 통화에 대한 이자율은 25~30%에 달하고 미화에 대한 이자율도 15% 내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수료 또한 유럽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외국 투자자의 현지 금융 조달의 경우 실익이 적음.
- 비교적 높은 이자율 및 수수료로 가나 현지 은행들은 자본금 대비 연평균 80%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가나 정부 또한 경쟁 촉진으로 이자율 및 수수료를 낮추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어 은행 산업 투자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 서비스

- 외국계 및 로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25개 이상의 보험사가 가나에서 활동 중이며,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2006년에 폐지되었으며,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어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음.
- 가나 정부는 자동차, 건설 중인 상업용 건물, 건물 붕괴 및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가나 보험회사 현황

- 국영 보험회사
 - State Insurance Company
- 시중 보험회사
 - Metropolitan Insurance Company, Vanguard Assurance Company, Glico Insurance Company, Starlife Assurance Company 등

□ 증권 시장

- 1990년 가나증권시장(Ghana Stock Exchange)이 개장되어 주식, 채권, 국채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2009년 초부터 전자 거래가 시행되고 있음.
-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35개)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임.

다. 노동제도

□ 가나 노동법

- 가나 정부는 2003년 노동법 651조(The Labour Act 2003: Act 651)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가나 내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되고 있음.
 - 가나 노동법에는 고용 보호, 고용 안정, 불공정 노동행위, 노동 조합, 고용인 조직, 직업병, 고용 환경 등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가나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등록 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인 및 장애인 종업원 모두에게 특별 혜택이 주어짐. 특별 혜택의 내용은 노동부 장관에 의해 결정됨.
- 모든 사업장(단순 가사노동 제외)에서는 21세 이상의 종업원만 고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조건 및 자격 등을 명시하여 고용센터(Employment Center)에 구인 신청을 해야 함.

□ 고용계약

- 가나에서 6개월 이상의 모든 고용관계는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인과 종업원의 권리,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고용계약은 급여 지급 기간에 따라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노동부 장관, 고용인 조직, 노동자 조직으로 이루어진 전국 3자 위원회(National Tripartite Committee)에서 최저 임금이 결정되며, 1일 최저 임금은 GHC 2.655(약 1.8달러)임.
- 고용계약은 양측 당사자의 동의 또는 사전 통지 등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모든 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보장비용

- 사회보장비용 납부는 가나 근로자의 의무이며, 고용인은 종업원의 임금 중 5%를 공제하고 고용인 부담금 12.5%를 추가하여 매월 임금의 17.5%를 사회보장비용으로 납부해야함.

□ 근로 시간

- 정규직 고용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 한도임.
 - 특정일의 공식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특정일을 제외한 날 8시간 이상의 근무가 가능하나, 하루 9시간, 주간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기적인 특성상 근무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하루 최대 10시간 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년 간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유지해야 함.
- 고용인은 종업원이 정규 시간 이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무급 초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본제공 휴일은 15일

- 1년 동안 근무하여 전액 급여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최소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적어도 휴가 시작일 30일 전에는 사측에 휴가일정을 공지해야 함.
-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기본 휴가에 포함 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

- 모든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정책 결정,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음.

- 고용인은 종업원에게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차별 대우를 하거나 혜택을 줄 수 없음.
- 노동조합은 재정적인 면에서 사측과 분리되어 있으며, 회계 연도 마감 이후 6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
- 가나 노동조합은 비교적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국노동위원회

- 가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관리 및 산업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Commission)를 구성하고 있음.
- 전국노동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고용인 조직, 노동자 조직에서 각각 2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고용인 조직, 노동자 조직의 협의로 의장을 선정함.

전국노동위원회 기능

- 산업분쟁의 해결을 촉진
- 불공정 노동행위 등의 조사 및 노동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
- 자격을 갖춘 중재자 또는 조정자 목록 관리
- 효과적인 노동조합 역할 추진

라. 토지제도

□ 토지 소유 제도

- 가나의 헌법은 토지 형태를 소유권을 기준으로 공공 토지(Public lands), 족장 토지(Stool lands), 개인/가족 토지(Private/Family lands)로 분류하고 있음.
 - 가나 토지의 70% 이상이 족장 소유의 토지로 추정되며, 족장 토지를 임차할 경우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임.
- 가나에서 외국인은 헌법에 의해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 토지소유권자와의 임차계약만 가능함.
 - 내국인은 최대 99년까지, 외국인은 최대 50년까지 임차계약이 가능하며, 임차계약은 연장 가능함.
- 토지위원회(Lands Commission)에서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복잡하므로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함.

□ 자유무역지대 토지 이용

- 가나의 자유무역지대 토지는 Fumesua Fee Zone, Export Processing Zone, 개별 공장 Free Zone의 세 지역으로 구분되며,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라 이용 가능함.
 - Fumesua Fee Zone은 쿠마시 인근 229 에이커의 토지로 가나 북부 및 사헬리안 국가 물류허브로 구성되어 있음.

IV.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 Export Processing Zone은 테마 1,200 에이커의 토지와 세콘디 지역 2,200 에이커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 공장 Free Zone은 개별 공장지를 자유지대로 지정한 것으로 현재 66개의 회사가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대 토지는 Business Focus Group(말레이시아계), Tema Industrial Park 등의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공장 창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테마개발회사

- 테마 지역의 모든 토지는 국영회사인 테마개발회사(Tema Development Corporation: TD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도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테마 지역 토지 이용료는 에이커당 4만 2천 달러로 산업개발 공제시 10% 공제됨.
- 토지 이용료는 현금지급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0%가 공제되고 분할납부할 경우 선금 지급 후 8분기 분할 납부가 가능함.